

[서식 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이행권고결정으로, 토지)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 구 금 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소○○○ 임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 2.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의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 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
1.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소·시군구청통보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소보관용) 각	1통
1.	법원보관금영수증	1통
1.	이해관계인목록	1통
1.	부동산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O O O O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 전 168㎡.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1. 1번근저당권자 ●●은행

○ ○시 ○ ○ 구 ○ ○ 길 ○ ○ (우편번호) 대표자 은행장 ◎ ● ● (소관 ● ● 지점)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2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3번근저당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출법원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 제 268조) 민사집행법 제8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 1통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비 용	• 인지액: ○○○원(□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 송달료: ○○○원(□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납부 • 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가 점 대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인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